

서울특별시검도회 도장발전특별위원회 규정

제정 2023. 01.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특별시검도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소속된 검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와 검도지도시설(도장, 센터, 기타시설)의 활성화를 통한 검도인구의 저변확대와 본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본 규정에서 지칭하는 검도지도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장”이라 함은 검도를 전문으로 지도하는 곳으로 적합한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업신고’를 관할 구청에 필한 후 본회에 등록하고 검도를 보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센터”라 함은 도장 이외(개인, 법인,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시설로써 적합한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본회에서 추천받아 지도자와 단체를 등록하고 대한검도회에 공인지도자의 자격을 인정받아 검도를 보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3. “기타시설”이라 함은 해당 학교 학생과 동문, 동일 소속 직장의 구성원, 동일 소속 동호인들로 이루어진 지도시설들을 망라하며 설치 목적과 다른 회원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적합한 자격을 갖춘 지도자와 그 단체를 등록하여 검도를 보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장 자격, 등록

제3조(자격) 지도자(관장, 사범)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한검도회 검도4단 이상자로 사범자격증을 취득한 자.
2. 대한검도회의 지도자강습회를 이수하고 공인지도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본회나 대한검도회의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대한검도회 및 본회의 지도자강습회 미 이수자.
6. 타 시.도에서 임원이나 지도자로 활동 중인 자.

제5조(등록) 검도지도시설을 갖추고 검도장이나 검도강좌를 개설, 운영코자 하는 개인과 단체는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여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기준)

1. 도장등록은 제3조(자격)에 해당되는 자로써 소정 절차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한다.
2. 센터등록
 - ① 검도를 지도할 수 있는 일정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신규등록 시 지도자의 위촉은 제3조(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지회가 서울시검도회에 추천을 원칙으로 하며, 추천이 없을 시 서울시가 한다. 단, 최 인근 관장의 의견을 참고한다.

③ 지도자가 2명 이상일 때 전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지도자가 개인사정으로 유고 시는 신규 등록 센터의 지도자 위촉과 동일하게 지회에서 서울시검도회에 추천하며 본회에서 파견한다. 단 지도자가 2명인 경우 다른 지도자의 의견을 참고한다.

3. 기타시설은 제3조(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써 본회 소정 양식(붙임1)을 작성하여 등록한다.

4. 모든 검도시설은 지회 소속을 당연히 한다.

제7조(거리.홍보제한) 도장간의 거리.홍보 제한은 다음과 같다.

1. 도장 간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500m이상으로 한다.

2. 특별히 500m가 안 되는 경우에는 대한검도회에서 규정하는 세칙에 따라 본회 도장발전특별위원회의 심의와 본회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3. 홍보(포스터.차량운행 등)의 경우 1항의 거리제한을 위반할 경우, 구검도회의 이의신청에 따라 도장발전특별위원회, 서울시검도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8조(지도범위) 지도활동과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써 본인 명의 지도시설에서 무등록자나 타 지도자가 지도 시 적발되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제9조(심사관련비용) 심사(급, 단)관련 비용은 본 위원회에 논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10조(품위손상행위)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등록 취소나 징계를 논의 할 수 있다.

1. 검도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

2. 본회에 단체 및 지도자를 등록하지 않고 검도지도를 하는 행위, 타 지도자 명의로 급, 단증 신청이나 발급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

제11조(등록의 취소) 본회는 등록된 검도지도시설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1. 관장 또는 지도사범의 유고로 6개월 내 후임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도지도시설을 등록한 경우.

3.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경우.

4. 제10조의 품위손상행위에 관련된 경우.

제12조(징계상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도자와 단체에 징계를 논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 부정하게 등록한 경우.

2. 제10조의 품위손상행위에 관련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제3장 도장발전특별위원회

제13조(구성) 본회는 본 규정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하여 도장발전특별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3. 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소집) 위원장은 필요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2/3이상 동의를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 의결은 3분의 2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 위원회의 심의와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2023. 0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 단 심사관련 비용

구분	회원증 발급비	금	소년초단, 초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금액	1만원	35,000원	15만원			20만원			

붙임 1.

검도단체등록신청서

단체명					
대표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漢字			
	단체주소				
지도자	성명	한글		주민번호	
		漢字			
	주소				
	이메일		연락처	자택: 휴대폰: 기타:	
	단/칭호	단(번호:) 칭호(취득일:)	사범 자격증	발행번호 : 발행일자 :	
심사위원 자격증	발행번호 : 발행일자 :	심판 자격증	발행번호 : 발행일자 :		
개설일		총면적	m ²		
수련장	m ²	샤워장	남 : m ² / 여 : m ²		
사무실	m ²	탈의실	남 : m ² / 여 : m ²		

위와 같이 검도지도시설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검도회장 귀하

- 첨부 : 1. 인감등록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3. 지도자등록신청서(신규 : 지도자 이력서, 사진 포함)
4. 생활체육 3급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자 2급 사본

인감등록신청서

단체명 :

직 인

지도사범실인

위와 같이 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검도회 귀중

지도자 등록 신청서

(기타지도시설)

구	신규
분	갱신

지	성명	(한글)	생년월일	칭호	
		(漢字)			
도	연락처	(전화)	(핸드폰)		
	사범자격증번호		단 / 단증번호	단 /	강습회 수료증 번호
자	주요 경력 (상별 및 검도경력)				
	위촉기간	년 월 ~	년 월까지(또는 현재까지)		

사회 체육 센터	단체명칭				
	주소 (전화번호)	(☎ :)	우편번호 ()		
	홈페이지 주소	http://www.			
	시설	바닥 - 면적: m ² , 재질:			
		부대시설 - 사무실: m ² , 탈의실: m ² , 욕실: m ²			
	개설일자		현 공인증번호	제	호

위와 같이 지도자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서울특별시검도회장 귀하

※ 단체명 직인은 지도자의 직인이 아닌 소속 단체의 장의 직인이어야 함

